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37

발의연월일: 2022. 8. 19.

발 의 자: 박정하·김선교·김정재

김학용 · 김희국 · 박덕흠

서일준 • 유경준 • 이종배

정동만 · 조명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은 제작자등이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와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지여부를 사후 점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발생시 대규모리콜 등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왔음. 제작자등도 전기차 구동축전지(배터리)등과 같은 핵심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인증한

후 판매를 했다가 안전기준 부합 여부 등을 사후에 검증받고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어왔음. 실제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리콜로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등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는 이차전지 시장의 65.9%에 달하는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시장규모가 10배이상 성장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등 분야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제조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등록, 운행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및 성능관리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위해서는 구동축전지의 등록 및 적극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작자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되는 일부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한해서는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를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

- 나.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 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7 신설).
- 다.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증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는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 라. 제작자등이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 핵심장치등에 대해서 사전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전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8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원동기형식"을 "원동기형식(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사전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이하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도 불구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하 "사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인증을 취소하고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30조의8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이미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핵심장치등에 대하 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사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사전인증 절차 등) ① 제30조의7에 따라 사전인 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등을 한 때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 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능시험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 안전성능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사전인증 후에도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지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결과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부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 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필 요한 시설, 장비 및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사전인증,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전단 중 "제30조의6까지"를 "제30조의8까지"로 한다.
- 제75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전인증의 취소
 -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검사"를 "안전검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 제77조의2에 제2호의4 및 제2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4.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등에 관한 업무
 - 2의5.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 제79조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에 따른 사전인증

을 받은 자

5의4. 제30조의7에 따른 사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제81조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3. 제30조의8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7, 제30조의8 및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 차 및 부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
	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
	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	6
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	
차 소유자, <u>원동기형식</u> , 차종,	원동기형식(전기자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	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식별
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	<u> 번호를 포함한다)</u>
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	
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	<u></u>
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u>.</u>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듯) ①·② (샌 · 량)	듯) ①·② (혀해과 간으)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야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사전인 증) ①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 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구 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 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 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 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 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 터 인증(이하 "사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 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 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사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 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자동차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인증을 취소하고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8제4항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u><신</u>_설>

⑤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이미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에 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핵심장치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 이 사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 다.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사전인 중 절차 등) ① 제30조의7에 따라 사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등을 한 때에(자동차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안전기 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관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관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 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 장치등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능시험의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 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 행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 안전 성능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부 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 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사 전인증 후에도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지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 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결 과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 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부적합 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 인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 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7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 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 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 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 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 31조의4까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 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 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 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

따라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
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
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하여야 한다.
⑥ 사전인증,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0조의8
<i>까</i> ス]
·

대행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
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
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
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
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
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
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은
그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
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으로 본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 조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u><신 설></u>

4. ~ 7. (생략)

제75조(청문)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사전인증의 취소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		
는 판매의 중지명령		
4. ~ 7. (현행과 같음)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 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 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 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 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 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 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 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 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76조(수수료)		
<u>안전</u>		
안전검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u>검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u>		
건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사,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 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 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 · 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 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 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 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 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 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 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 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18. (생 략)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u>신청하는 자</u>		
8. ~ 18. (현행과 같음)		
∥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 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1. ~ 2의3. (생 략) <신 설>

<신 설>

3. ~ 9. (생략)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의2. (생 략) <u><신 설></u>

<신 설>

6. ~ 19. (생 략)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이2 (처체되 가야)
1. ~ 2의3. (현행과 같음)
<u>2의4.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u>
안전성능시험 등에 관한 업무
2의5.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3. ~ 9.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u>.</u>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에 따른
방법으로 제30조의7에 따른 사전인증을 받은 자
<u>방법으로 제30조의7에 따른</u> 사전인증을 받은 자 5의4. 제30조의7에 따른 사전인
방법으로제30조의7에따른사전인증을받은 자5의4.제30조의7에따른 사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
방법으로제30조의7에따른사전인증을받은 자5의4.제30조의7에따른 사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및부품을판매한자
방법으로제30조의7에따른사전인증을받은 자5의4.제30조의7에따른 사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
방법으로제30조의7에따른사전인증을받은 자5의4.제30조의7에따른 사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및부품을판매한자
방법으로제30조의7에따른사전인증을받은 자5의4.제30조의7에따른 사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및 부품을판매한자6.~ 19.(현행과 같음)
방법으로제30조의7에따른사전인증을받은 자5의4.제30조의7에따른 사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및 부품을판매한자6.~ 19.(현행과 같음)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u> 6의2.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
	<u>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u>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u><신 설></u>	<u>1</u> 6의3. 제30조의8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7. ~ 28. (생 략)	17. ~ 28. (현행과 같음)